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9
----------	-----

제출년월일 2000. 10. 10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2.9. 대통령령 제16706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5.4. 건설교통부 제234호)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 따른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건축연면적 12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의 설치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2항)
- 나. 허용지역외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 다. 별표의 허용지역중 도로주변지역내에서는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호)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다음에 "(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를 삽입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이라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하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후에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파주시준농림 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1항 별표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상 설치허용 여부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설치허용 여부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과 ☎ 940-4701
입 안 자	도 시 과 장	우 범 찬
	도시계획담당	정 원 모
	담 당 자	우 상 완

【별 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지역

구 분	허 용 지 역
1.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4.862km ²)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2. 도로주변지역 (건축연면적120m ² 미만의 식품접객업 제외)	·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 국도, 지방도, 군도(시도)의 경계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3. 하천주변지역	· 국가 및 지방1·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4. 저수지주변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집수구역
5.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	·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미풍양속등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조(목적)----- -----숙박업,관광숙박업의----- -----한다.	제1조(목적)----- -----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숙박 업등”이라한다)의----- -----한다.	행위제한시설의 통합명칭 사용으로 조문정비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1.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면적이 120제곱미터미 만의 식품접객업 2.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농·축·수산물 직판장내 일반음 식점 및 휴게음식점 3.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변의 휴게소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3조(적용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일정규모 이하의 식품접 객업과 일부시설에 대하 여 법령상 제한지역내 허 용토록 조례로 정하고 있 어 법령과 상반되므로 삭 제

현행	개정안	사유
제4조(설치허용지역)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등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①위원회는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1항 별표중 제8호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설치허용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이라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위원회는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별표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상 설치 허용 여부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설치허용 여부 ② <삭제>	상위법령상 제한지역에 대한 허용시설을 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허용은 법령과 상반되므로 삭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시하는 조문정비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조문정비 개정조례에 따른 조문 정비 개정조례 제4조 제2항에 심의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삭제

별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지역

구 분	허용지역
1.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4.862km ²) 으로부터 500미터이상 이 격된 지역
2.도로주변지역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이격된 지역 ○국도, 지방도, 군도(시도) 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 상 이격된 지역
3. 산림지역	(생략)
4. 농지지역	(생략)
5. 문화재보호 구역등 주변 지역	(생략)
6.하천주변지역	○국가 및 지방1·2급 하천 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된 지역
7. 저수지주변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 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이격된 집수구 역
8.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	(생략)

별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지역

구 분	허용지역
1.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4.862km ²) 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 하여 이격된 지역
2.도로주변지역 (건축연면적 120 m ² 미만의 식품점 객업 제외)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로부 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 격된 지역 ○국도, 지방도, 군도(시도) 의 경계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3. 삭제	<삭제>
4. 삭제	<삭제>
5. 삭제	<삭제>
3.하천주변지역	○국가 및 지방1·2급 하천 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지역
4. 저수지주변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 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여 이격된 집수구역
5. 주민정서 및 주변여건 판단지역	(현행과 같음)

제한지역별 이격거리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조정

3호,4호,5호의 내용은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중복 적용됨에 따라 삭제